

사회봉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9.16. 개정 2020.03.16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6.03.20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사회봉사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를 위한 봉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교내위원은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교외위원은 사회봉사 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03.16., 개정 2022.03.04., 2026.03.20.>
-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16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6.03.20.>

제4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학생팀 직원으로 한다.
<개정 2026.03.20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경비 등 지원)

위원회에 참석하는 교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3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